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1.

발의자 : 설훈 · 김영진 · 이석현
이용득 · 조승래 · 오영훈
유은혜 · 김상희 · 안민석
소병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. 그러나 기본계획의 공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
다.
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
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본계획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기본계획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</u>
⑥ (생 략)	<u>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</u>